

광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619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김민지

피고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기

변론 종결2023. 6. 22.

판결 선고2023.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12. 5. 체결된 채권포기합의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5,547,4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와 피고의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 1) B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D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 2)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5. 4. 7. C와, C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사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C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3) 피고는 2017. 9. 28.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2018. 2. 2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0. 4. 'C는 원고에게 56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797)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와 용역대금 지급 합의

- 1) 피고는 2018. 11.경 C,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C에게 업무대행용역비 및 선지급 비용으로 25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E와 신규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8. 11. 29. 각서(아래의 '업무대행사 계약 포기 각서'와 '계약 합의 각서'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대행사 계약 포기 각서

2015. 4. 7. B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금번 당사 및 피고 간 의견차로 더 이상 업무대행용역업을 수행할 수 없어 금번 제안한 합의각서를 근거로 용역계약을 포기 해지하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피고 조합장 귀중

상호: C

위치	광주 광산구 D외
계약금액	533세대 예정. 900만 원 ~ 1,000만 원/세대, 선지급 비용
합의금액	일금 이십 오억 원정(2,500,000,000)

1. 피고

- 1) 업무대행용역비 및 선지급 비용은 총 25억 원으로 한다.
- 2) 위 금원은 2019. 4. 30.에서 2019. 7. 30.까지 지급한다.
- 4) C의 투자금원 및 채권에 대하여 C 및 C가 지정한 자(채권자별)에게 조합에서 직접 지급한다.
- 6) 위 금원에 대하여 C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을 한다.

2. 업무대행사(C)

- 1) 위 금원으로 확정함에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2) 투자금 유치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위 금원으로 상환 완료하여 사업 진행에 부채로 인한 제약을 해소한다.
- 4) 회사의 부채를 채권자별로 합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합의서(취하서)를 징구하여 피고 측에 제출한다. 추후 본 합의결과에 따라 민, 형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3. E

- 1) 토지 계약 갱신 및 신규 계약, 사업계획승인 신청 승인보완 접수를 조속히 완료한다.
- 4) 조합과 C간 합의금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한다.
- 6) 기존 C의 업무상 업체간 계약을 포괄승계한다.

4. 공동 합의문

- 1) C의 계약 포기 조건은 업무대행용역비 및 선투입비용(투자채권)을 포함하여 금 이십 오억 원으로 한다(F 채권 15억 원과 G, H 관련 피고의 소송은 유지 대응한 후 그 결과에 따른 금원을 C가 부담한다).

2) 피고 및 E는 C가 채무 상황에 따른 합의서 징구 시 적극 방어 또는 지원을 하여 조속하고도 매끄럽게 합의되도록 한다(직불합의서 발급 의무).

3)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8. 11. 29. C에게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149호로 'C가 2018. 11. 29. 피고에게 2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9. 4. 30.부터 2019. 7. 30.까지 C에 위 대여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4) 피고는 2018. 12.경 C, E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채권 및 그 지급 방법에 관한 추가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서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추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

특약사항

본 특약사항은 계약포기 합의각서에 우선한다.

1) 업무대행 포기에 따른 총액은 일금 삼십억(3,000,000,000) 원으로 한다.

2) 삼십억 원의 지급방법 및 지급하여야 할 명단

1	J(K)	삼억오천	350,000,000	C법인	L지분
2	M	이억	200,000,000	N	(O)
3	P	이억	200,000,000	C법인	L지분
4	Q	삼억	300,000,000	Q	Q
5	G	이억	200,000,000	G	R
6	S	구천만	90,000,000	N	N
7	T	삼천칠백이십만	37,200,000	T	T
8	U	일억오천만	150,000,000	U	U
9	F	오억	500,000,000	F	V
10	W	이억	200,000,000	W	W
11	X	이억	200,000,000	X	X
12	Y	사천오백만	45,000,000	Y	Y
13	Z(AA)	일천오백만	15,000,000	AA	전기감리계약건(AA)
14	AB(AC)	사천만	40,000,000	(주)AD	(주)AD
15	E	사억	400,000,000	E	투자금(토지압류)
16	AE	일억	100,000,000	AE	AE
합계	3,027,200,000	부족한 금원은 C에서 해결한다			

원고는 2020. 2. 18.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초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서상 합의금 중 청구금액 696,777,08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0. 2. 24. 그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03945,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0. 5.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소송과 그 결과

원고는 2020. 11.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는 2018. 12.경 C, E와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추가 합의를 통해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을 30억 원으로 증액하고, 위 30억 원을 C가 지정한 C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C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일인 2020. 5. 22. 이전에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을 포기 내지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20가합60852,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C의 무자력

C는 2018. 11.경부터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8. 12.경 이 사건 추가합의를 통해 C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2020. 2. 18.경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의 포기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21. 11. 23.경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 당시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의 포기는 2018. 12.경 이루어진 이 사건 추가합의에 의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각서에는 2018. 12.경 이루어진 이 사건 추가합의와 그에 따른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서 위 합의각서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인 2020. 11. 23. 이전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20. 2. 18.경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 당시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의 포기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C에 대하여 2021. 11. 23. 기준 845,547,480원(= 원금 561,800,000원 + 2018. 3. 9.부터 2021. 11. 23.까지의 지연손해금 283,747,480원1))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C는 2018. 12.경 피고, E와 이 사건 추가합의를 통해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을 2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고, 위 30억 원을 피고가 C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20. 11.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C가 이 사건 추가합의를 통해 추심명령 송달 이전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을 포기 내지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이 사건 관련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와 피고의 이 사건 추가합의가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C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와 이 사건 추가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피고와의 이 사건 추가합의를 통해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을 기존 2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그 30억 원을 피고가 C의 채권자들인 J 등 16명(이하 '관련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C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C가 이 사건 추가합의를 통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을 일방적으로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와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대위변제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약정하고 그 대가의 지급으로서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을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추가합의로 C는 이 사건 합의금 채권 상당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 상당의 소극재산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합의로 C의 일반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금 채권이 기존 2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5억 원 증액됨으로써 그 적극재산이 증가하여 일반책임재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나아가 C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와 이 사건 추가합의를 하였다거나 관련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피고와 이 사건 추가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임태혁

판사김준환

판사김창환

1) 561,800,000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10. 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393,643원(= 561,800,000원 × 연 6% × 210일/365일) + 2018. 10. 5.부터
2021. 11. 23.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4,353,835원[= 561,800,000원 × 연
15% × (3년 + 50일/365일)]